



제 428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낙시어선업자 등에 대한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근거 및 벌칙 규정 신설 등〉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480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낚시어선업자 등에 대한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근거 및 벌칙 규정 신설	2
2. 음주,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측정 요구 불응 시 해기사 면허 취소, 효력 정지 등 규정	9
3. 부칙 규정	14

I. 제안경위

2025년 7월 15일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도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1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낚시어선업자 등에 대한 약물·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 근거 및 벌칙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①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약물복용 상태에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②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장소에서 약물복용의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제3항·제4항 및 제5항, 제53조제2항제6호의3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생략)	제31조(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관계 공무원”이라 한다)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그 측정에

<신 설>

<신 설>

<신 설>

제53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따라야 한다.

1. 경찰공무원

2.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
상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근
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
외한다)이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
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
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
에 대하여는 해당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동의를 받아 소변 또
는 모발 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 관계 공무원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제1항 후단에
따른 약물복용의 상태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조종·승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한다. 1. ~ 6. (생략) 6의2.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1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신설> 6의3. (생략) 7. ~ 9.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 ----- ----- -----제31조제1항을----- ----- ----- ----- 6의3.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약물복용의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의4. (현행 제6호의3과 같음) 7. ~ 9.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 현행법 제31조에서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2항에서는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기는 하지만 약물을 복용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해당 행위를 단속하고 예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물복용 상태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게 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며, 약물복용 상태에 대하여 측정 불응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낚시어선 조종은 음주상태 만큼 수상안전 및 해상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의 금지 의무의 이행·확인 수단 확보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어선 조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측정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짐.

특히, ①현행법 제30조제2항에서 음주상태에 대해서는 이미 측정 근거 및 측정요구에 응할 의무를 두고 있지만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어선 조종에 대해서는 공백이 있어 온 점, ②최근 개정된 「도로교통

법」에서 약물복용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측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해상교통 영역에서 동일 취지를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 또한, 현행법 제53조제5호·제6호·제6호의2에서는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상태와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는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약물복용 측정 의무에 따르도록 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약물복용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주체를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에 해당하여 약물복용 측정 등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는 「납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음주·약물 측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태이므로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약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납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하여는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¹⁾ 불복 시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현행법 제55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여 조종·승선 제한 등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조종·승선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약물복용의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납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조종·승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를

1)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효성 담보를 위해 과태료 등의 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음주,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측정 요구 불응 시 해기사 면허 취소, 효력 정지 등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음주,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음주, 약물복용 상태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1조의2(해기사 면허의 취소·정지 요청)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경우

2.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경우

4.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

	<u>닌 장소에서 약물복용의 상태</u> <u>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u> <u>가 있는데도 제31조제2항에 따</u> <u>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u> <u>지 아니한 경우</u>
--	---

나. 검토의견

-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 각 호에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술”과 관련해서는 ①-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①-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정하고 있음.

한편, “약물환각물질”과 관련하여서는 ②-1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76)에서는 ②-2 약물환각물질 상태에 대한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해기사 면허 취소(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의 요청 사유로 추가하고 있음.

□ 한편, 현행법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구조와 동일하게 ①-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①-2 음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②-1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동 개정안에서는 ②-2 약물복용 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은 「해상교통안전법」과 달리 음주·약물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는 경우 또는 음주·약물 상태에 대한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음주,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측정 요구 불응 시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상교통안전법」의 체계와 동일하게 규율함으로써 법 집행의 형평성을 담보하고, 음주,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는 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표] 「해상교통안전법」 및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비교

구분	「해상교통안전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적용대상	운항자나 도선사가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선박의 도선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낙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조종하게 하는 행위
음주·약물 상태 측정 주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해기사 면허의 취소·정지 요청	제42조(해기사 면허의 취소·정지 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2. 제39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규정 없음

□ 다만, 개정안은 해기사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인 「해상교통안전법」에서는 해양경찰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어 입법례를 참고하여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그 주체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3. 부칙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안 부칙).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적 수용성 향상 및 단속 준비 등을 위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 다만, 약물복용 상태에 대한 측정 거부 시 벌칙 및 면허취소 요청 등 행정제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법 시행 이후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방식 등의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418